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
2020년도 투명성 보고서

2021. 1. 29.

주식회사 문피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5(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 등)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1년 1월 29일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에 관한 2020년도 투명성보고서

1. 일반현황('20년 12월말 기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주식회사 문피아
대 표 자	김환철, 신동운
정보통신 주요서비스 / 3개월 일일평균이용자	웹소설(전자책) 서비스 '문피아(www.munpia.com)' / 3개월 일일평균 로그인 회원수 약 13만명
정보통신서비스부문 연평균 매출액	약 300억원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플랫폼본부 정책운영팀 권태현 팀장(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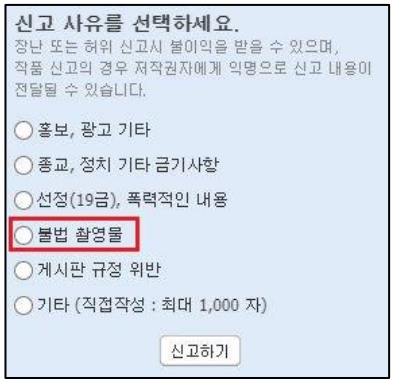
2.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일반적인 노력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 운영

① 간편 신고 장치(신고하기 시스템 구축 운영: 2014년 10월~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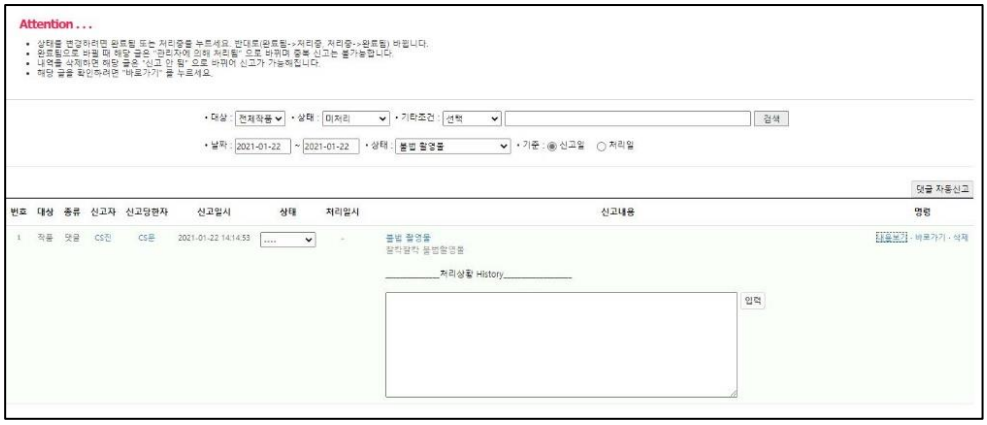
A. 신고 절차: 신고자가 불법촬영물등 포함된 게시글 혹은 댓글의 '신고' 버튼 클릭→신고 사유 중 '불법촬영물' 선택 후 신고하기 클릭.





B. 신고 확인 및 조치: 운영자가 관리자페이지에서 신고 내용 확인→불법촬영물 여부 검토→게시글 즉시 삭제(삭제 게시판 이관)→접속 차단 요청(개발실

인프라보안팀)→불량사용자 등재 및 해당 게시자에게 처리 결과 안내→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에게 처리 결과 보고.



② 금칙어 등록 불가(청소년 유해 단어, 불법촬영물 관련 단어 포함 게시글 등록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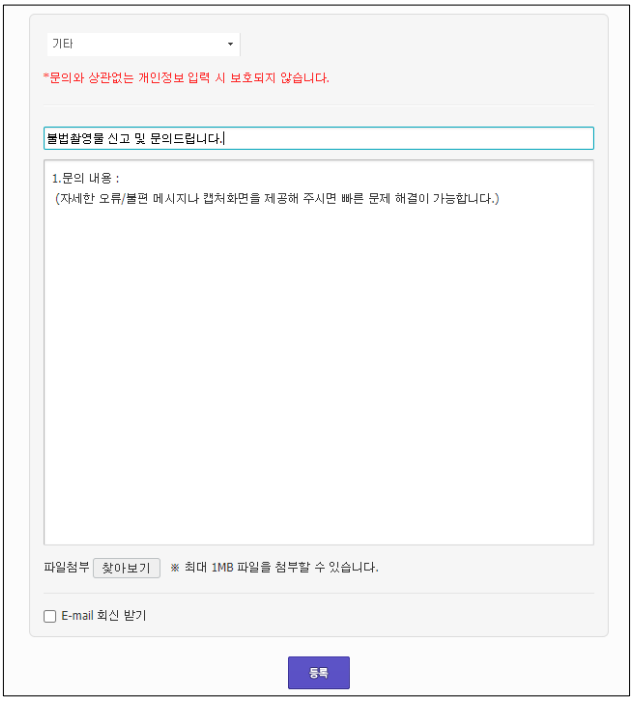


○ 운영 전담부서(현 정책운영팀) 및 고객센터 1:1문의(게시판), 전화(1644-6498), 메일(answer@munpia.com) 운영(2013년 3월~현재)

① 고객센터 1:1문의(게시판)(2014년 10월~현재)

A. 문의 절차: [고객지원]-[1:1문의] 클릭→불법촬영물 신고 및 문의 내용 기입→등록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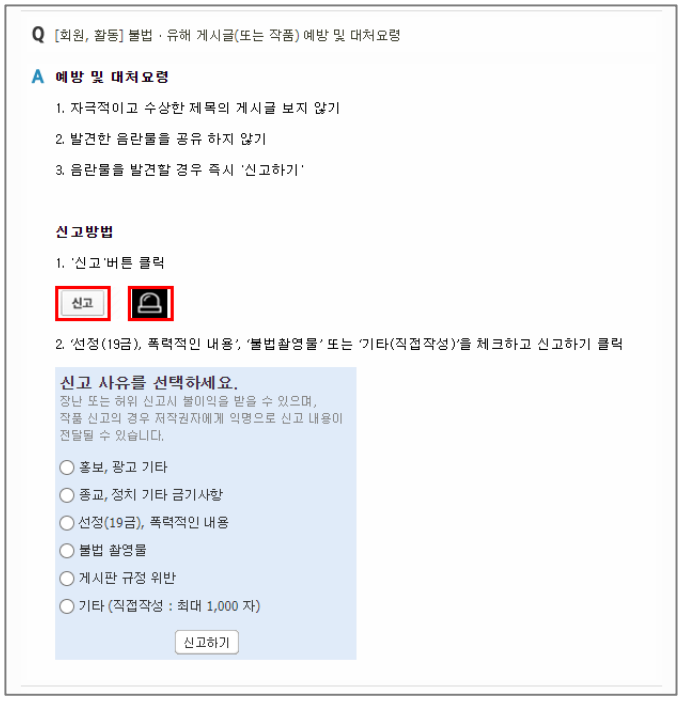
B. 문의 확인 및 조치: 운영자가 문의 내용 확인→불법촬영물 여부 검토→신고 여부 확인 후 미신고 시 관리자가 신고→게시글 즉시 삭제(삭제 게시판 이관) →이하 신고 확인 및 조치와 동일.



② 고객센터 전화(1644-6498), 메일(answer@munpia.com): 문의 확인 및 조치 방식 동일(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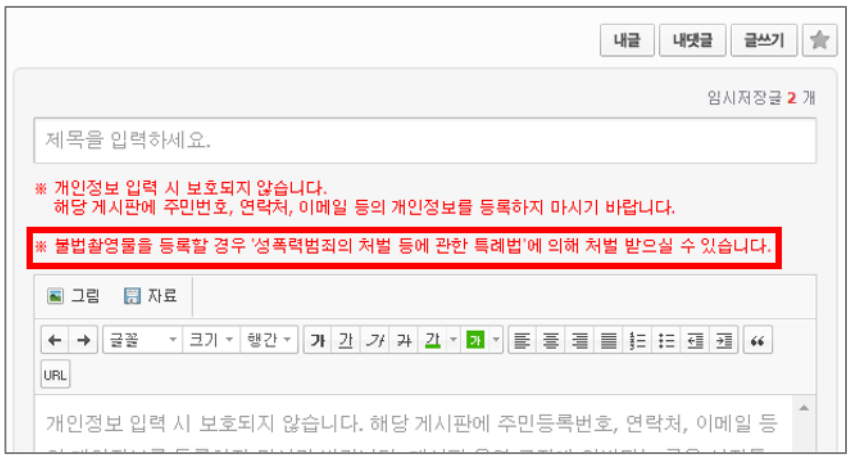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안내 페이지 운영(2013년 3월~현재)

① FAQ를 통해 불법촬영물 신고 방법 안내: [FAQ]-[회원, 활동]-[불법 • 유해 게시글(또는 작품) 예방 및 대처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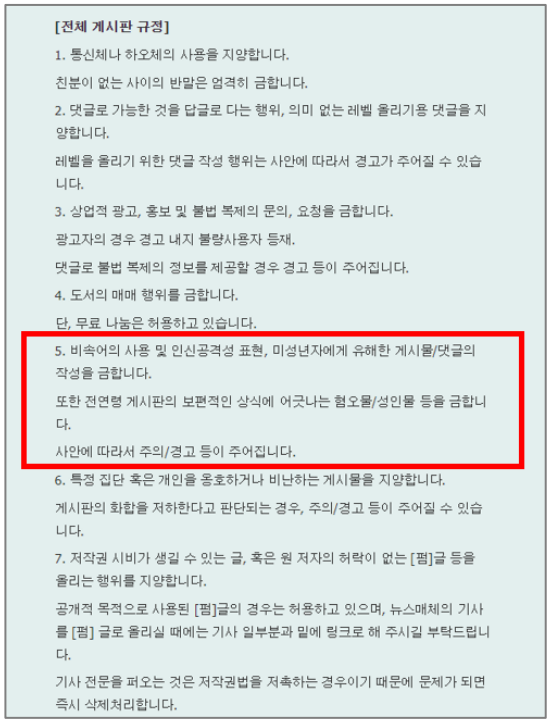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홍보

① 게시글 등록 시 불법촬영물 등록 경고 안내(2021년 1월 추가)



② 게시판 규정(https://square.munpia.com/boFree/page/1/beSrl/787308) 공지 사항 안내



[전체 게시판 규정]

1. 통신체나 하오체의 사용을 지양합니다.

친분이 없는 사이의 반말은 엄격히 금합니다.

2. 댓글로 가능한 것을 답글로 다는 행위, 의미 없는 레벨 올리기용 댓글을 지양합니다.

레벨을 올리기 위한 댓글 작성 행위는 사안에 따라서 경고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3. 상업적 광고, 홍보 및 불법 복제의 문의, 요청을 금합니다.

광고자의 경우 경고 내지 불량사용자 등재.

댓글로 불법 복제의 정보를 제공할 경우 경고 등이 주어집니다.

4. 도서의 매매 행위를 금합니다.

단, 무료 나눔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5. 비속어의 사용 및 인신공격성 표현,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게시물/댓글의 작성을 금합니다.

또한 전연령 게시판의 보편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혐오물/성인물 등을 금합니다.

사안에 따라서 주의/경고 등이 주어집니다.

6. 특정 집단 혹은 개인을 옹호하거나 비난하는 게시물을 지양합니다.

게시판의 화합을 저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의/경고 등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7. 저작권 시비가 생길 수 있는 글, 혹은 원 저자의 허락이 없는 [펌]글 등을 올리는 행위를 지양합니다.

공개적 목적으로 사용된 [펌]글의 경우는 허용하고 있으며, 뉴스매체의 기사를 [펌] 글로 올리실 때에는 기사 일부분과 밑에 링크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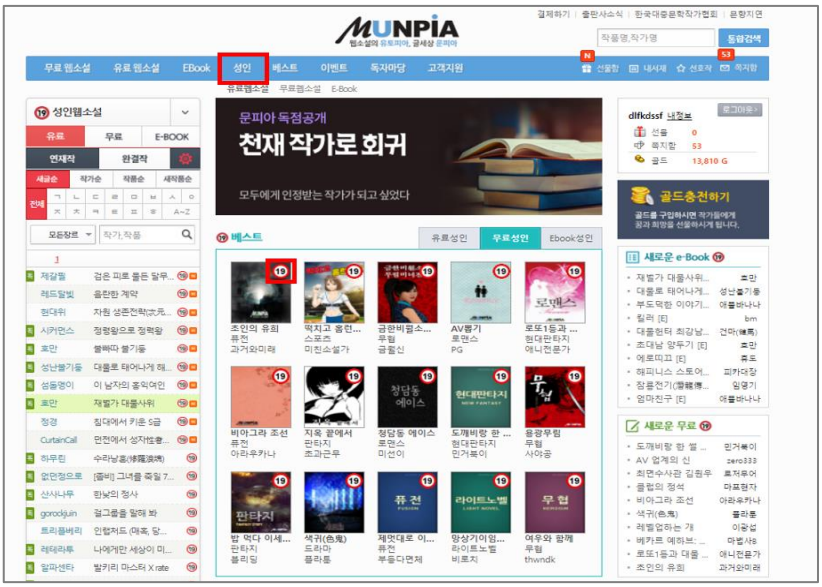
기사 전문을 퍼오는 것은 저작권법을 저촉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면 즉시 삭제처리합니다.

○ **청소년 유해물 표시 및 접근제한 시스템 구축 운영(2013년~현재)**

① 19금 작품 접근 차단 시스템(비로그인, 성인인증 하지 않은 회원 이용 불가. 성인인증 후 이용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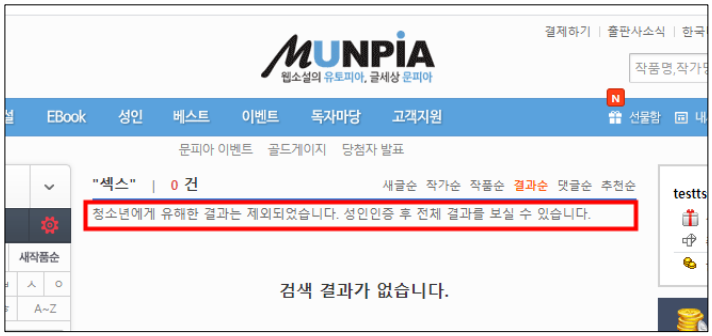


② 성인 메뉴 분리 및 19금 표시 시스템 개선 작업(2019년 8월~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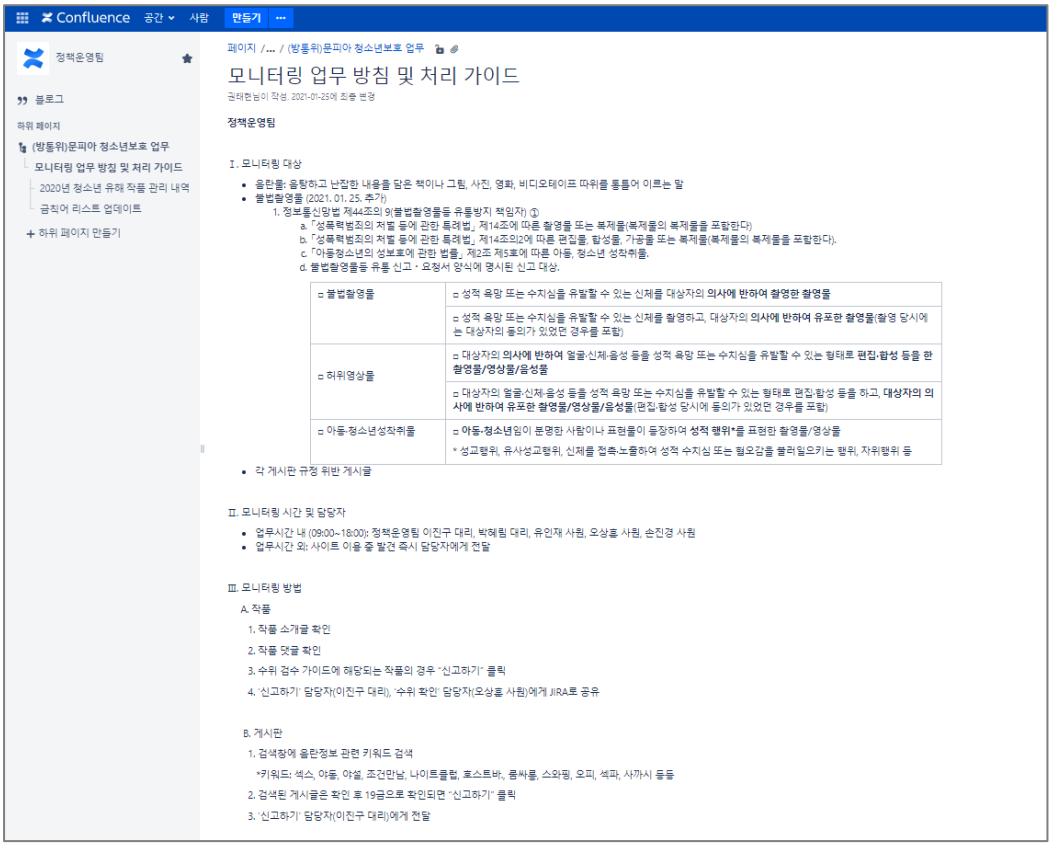
③ 작품 검색 금칙어 입력 결과 안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결과는 제외되었습니다. 성인인증 후 전체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청소년보호 및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자체 모니터링 운영(2014년~현재)**

(참고자료: 모니터링 업무 방침 및 처리 가이드)



Confluence 공간 사람 만들기

정책운영팀

블로그

하위 페이지

(방통위)문피아 청소년보호 업무

모니터링 업무 방침 및 처리 가이드

2020년 청소년 유해 작품 관리 내역

금칙어 리스트 업데이트

+ 하위 페이지 만들기

페이지 / ... / (방통위)문피아 청소년보호 업무

모니터링 업무 방침 및 처리 가이드

권태현님이 작성, 2021-01-25에 최종 변경

정책운영팀

I. 모니터링 대상

- 음란물: 음탕하고 난잡한 내용을 담은 책이나 그림, 사진, 영화, 비디오테이프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 불법촬영물 (2021. 01. 25. 추가)
  1.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9(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①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d.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요청서 양식에 명시된 신고 대상.

▫ 불법촬영물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고,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촬영물**(촬영 당시에는 대상자의 동의가 있었던 경우를 포함)
▫ 허위영상물	▫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얼굴·신체·음성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등을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
	▫ 대상자의 얼굴·신체·음성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등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편집·합성 당시에 동의가 있었던 경우를 포함)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아동·청소년임이 분명한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표현한 촬영물/영상물 *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신체를 접촉·노출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 등

- 각 게시판 규정 위반 게시글

II. 모니터링 시간 및 담당자

- 업무시간 내 (09:00~18:00): 정책운영팀 이진구 대리, 박혜림 대리, 유인재 사원, 오상홍 사원, 손진경 사원
- 업무시간 외: 사이트 이용 중 발견 즉시 담당자에게 전달

III. 모니터링 방법

A. 작품

1. 작품 소개글 확인
2. 작품 댓글 확인
3. 수위 검수 가이드에 해당되는 작품의 경우 "신고하기" 클릭
4. '신고하기' 담당자(이진구 대리), '수위 확인' 담당자(오상홍 사원)에게 JIRA로 공유

B. 게시판

1. 검색창에 음란정보 관련 키워드 검색
   *키워드: 섹스, 야동, 야설, 조건만남, 나이트클럽, 호스트바, 룸싸롱, 스와핑, 오피, 섹파, 사까시 등등
2. 검색된 게시글은 확인 후 19금으로 확인되면 "신고하기" 클릭
3. '신고하기' 담당자(이진구 대리)에게 전달

3. 불법촬영물등의 신고접수 및 처리결과

- 2020년 불법촬영물 신고 건수: 없음.
- 웹소설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어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사례가 없으나 신고접수 및 처리결과에 대한 건수 집계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



Confluence 공간 사람 만들기

정책운영팀

블로그

공간 바로가기

팀이나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하다 싶은 내용에 대한 바로가기를 이곳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사이드 바 구성.

하위 페이지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 요청 및 ...

2020년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 ...

+ 하위 페이지 만들기

페이지 / ... /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 요청 및 처리결과

2020년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 요청 및 처리결과

권태현님이 작성, 2021-01-25에 최종 변경

담당자: 정책운영팀 이진구 대리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30조의5제2항에 따라 동시행령 [별지서식] 또는 서식상의 내용을 포함한 문서에 의하여 신고된 건을 대상으로 함.
※ 대상기간 : '20.12.10. ~ 12.31.(신고접수 기준)

▫ **'20년 월별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현황 및 처리결과**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신고접수	신고·삭제 요청인	피해자 등	0	0	0	0	0	0	0	0	0	0	0	0	0
		기관·단체	0	0	0	0	0	0	0	0	0	0	0	0	0
		소계	0	0	0	0	0	0	0	0	0	0	0	0	0
	사유	불법촬영물	0	0	0	0	0	0	0	0	0	0	0	0	0
		허위영상물 등	0	0	0	0	0	0	0	0	0	0	0	0	0
		아동청소년성착취물	0	0	0	0	0	0	0	0	0	0	0	0	0

4.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에 관한 절차

○ 관련 규정 사이트에 고지(2013년 3월~현재)

① 문피아 이용약관(https://www.munpia.com/page/member_join_terms)

문피아 이용약관

제18조 1항
⑪ 수치심이나 혐오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화상 또는 영상을 계속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의 일상적 생활을 방해하거나 스토킹(stalking) 하는 등 타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⑫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⑬ 게시판 등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연결(링크)하는 행위
⑭ 윤락행위 알선 및 음행을 매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제18조 5항
회원은 문피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바이러스 제작 및 배포, 해킹, 광고를 통한 수익, 음란사이트를 통한 상업행위, 상용소프트웨어 불법배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영업활동의 결과 및 손실, 관계기관에 의한 구속 등 법적 조치 등에 관해서는 문피아가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은 이와 같은 행위와 관련하여 문피아와 타 회원에 대하여 손해배상 의무를 집니다.

제24조 2항
문피아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명의도용 및 결제도용,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 방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불법통신 및 해킹, 악성프로그램 배포, 접속권한 초과행위 등과 같이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영구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본 항에 따른 영구이용정지 시 서비스 이용을 통해 획득한 마일리지 및 기타 혜택 등도 모두 소멸되며, 문피아는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청소년보호정책(https://www.munpia.com/page/youth_policy)

문피아 청소년 보호정책

주식회사 문피아(www.munpia.com 이하 "회사"라 함)는 청소년의 안전한 인터넷 사용을 돕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란 법률에서 정한 청소년 보호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접근제한 및 관리조치
회사는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아무런 제한장치 없이 청소년 유해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별도의 인증장치를 마련, 적용하고 있으며, 동시에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를 통해 청소년유해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2.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 담당자 교육
회사는 정보통신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법령 및 제재기준, 유해정보 발견 시 대처방법, 위반사항 처리방법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하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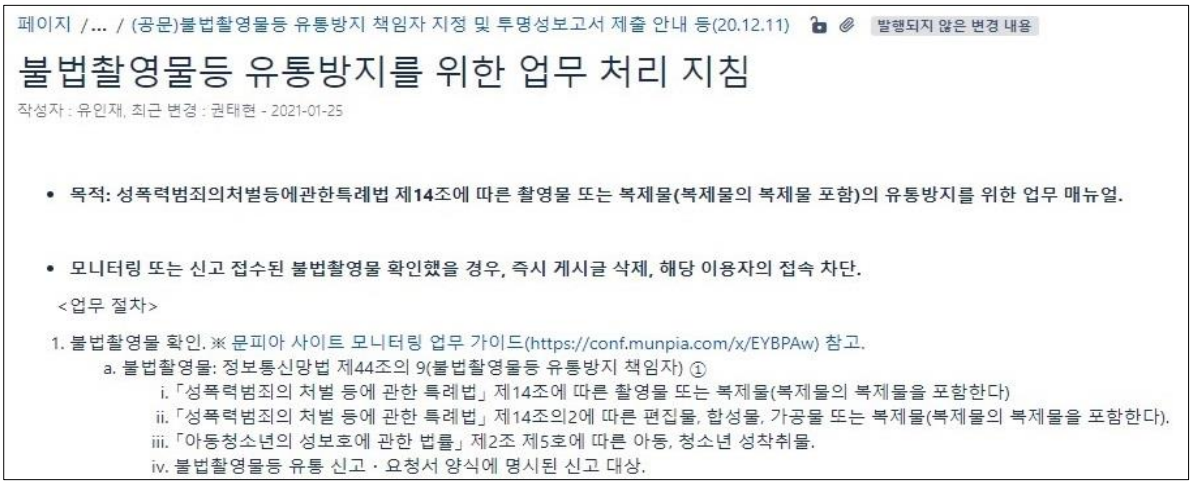
○ 불법촬영물등 처리에 대한 절차

<업무 절차>

① 불법촬영물 확인.
② 게시글 삭제(삭제 게시판 이동).
③ 접속 차단 요청(개발실 인프라보안팀).
④ 불량사용자 등재 및 해당 게시자에게 경고, 제재 안내.
⑤ 신고자에게 처리 결과 안내.
⑥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에게 처리 결과 보고.

· 내부 판단이 어려운 불법촬영물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접속.
② 조치의무사업자 전용 심의요청 메뉴 클릭.
③ 디지털 성범죄 심의요청(조치의무사업자 전용).
④ 유통방지 책임자 등 관계자 개인 명의 신고(인증 로그인).
⑤ 민원인 정보 입력.
⑥ 심의요청 정보(유통 중인 정보내용, 불법촬영물 등 유통 신고·요청서 사본 첨부, 심의 요청 사유) 입력.
⑦ 문자, 메일, 서신 자동 회신 선택. ※'디지털 성범죄 신고 조회'에서 신고내용 확인 가능.
⑧ 심의 결과에 따라 즉시 조치.



페이지 /... / (공문)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및 투명성보고서 제출 안내 등(20.12.11) 발행되지 않은 변경 내용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업무 처리 지침

작성자 : 유인재, 최근 변경 : 권태현 - 2021-01-25

- 목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의 유통방지를 위한 업무 매뉴얼.
- 모니터링 또는 신고 접수된 불법촬영물 확인했을 경우, 즉시 게시글 삭제, 해당 이용자의 접속 차단.

<업무 절차>

1. 불법촬영물 확인. ※ 문피아 사이트 모니터링 업무 가이드(https://conf.munpia.com/x/EYBPAw) 참고.
   a. 불법촬영물: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9(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①
      i.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ii.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iii.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iv.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 요청서 양식에 명시된 신고 대상.

○ 기타 운영관련 사항

유통방지 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실시한다.

① 불법촬영물등 처리에 관한 기술적 조치를 위해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시스템이 항상 운영될 수 있도록 일일 점검과 관련 인원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 불법촬영물등 처리에 관한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개선 작업을 진행하며, 해당 기록은 3 년 이상 보관한다.
③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서 및 해당 결과에 관련된 문서를 3 년 이상 보관한다.

5.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책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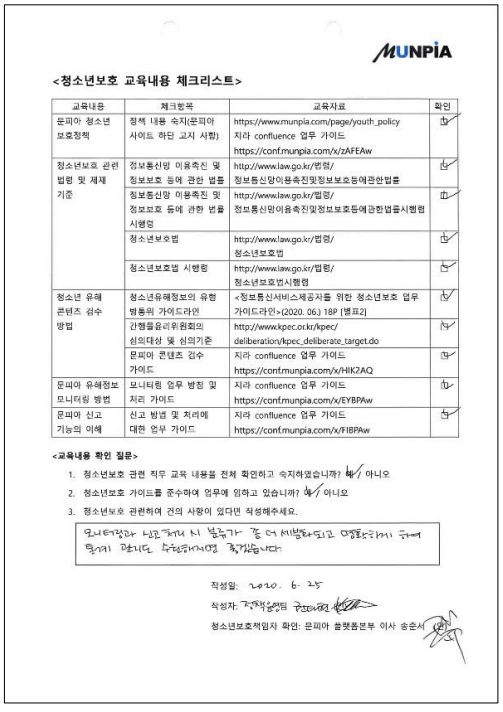
구 분	정	부
성 명	권태현	이진구
부 서	정책운영팀	정책운영팀
직 책	팀장(부장)	고객지원 파트장(대리)
지 정 일	2020. 12. 28.	2020. 12. 28.

6.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교육

○ 법시행 이전 실시되었던 유관 교육

교육일	교 육 명	참 석 자	시 간	교육기관
2020-06-29	청소년보호 법령과 업무 교육, 교육내용 체크리스트 점검 및 청소년보호 개선 사항 도출.	송준서 이사 정책운영팀 5명	2시간	자체교육
2020-09-08	청소년보호 법령과 업무 교육, 교육내용 체크리스트 점검 및 청소년보호 개선 사항 도출.	정책운영팀 4명	2시간	자체교육

(참고자료: 청소년보호 교육내용 체크리스트와 교육 사진)



MUNPIA

<청소년보호 교육내용 체크리스트>

교육내용	체크항목	교육자료	확인
문피아 청소년 보호정책	정책 내용 숙지(문피아 사이트 하단 고시 사항)	https://www.munpia.com/page/youth_policy 지라 confluence 업무 가이드 https://conf.munpia.com/x/zAFEAw	✓
청소년보호 관련 법령 및 제재 기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http://www.law.go.kr/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
	청소년보호법	http://www.law.go.kr/법령/ 청소년보호법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http://www.law.go.kr/법령/ 청소년보호법시행령	✓
청소년 유해 콘텐츠 검수 방법	청소년유해정보의 유형 별통짜 가이드라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위한 청소년보호 업무 가이드라인>(2020. 06.) 18P [별표2]	✓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대상 및 심의기준	http://www.kpec.or.kr/kpec/ deliberation/kpec_deliberate_target.do	✓
	문피아 콘텐츠 검수 가이드	지라 confluence 업무 가이드 https://conf.munpia.com/x/HIK2AQ	✓
문피아 유해정보 모니터링 방법	모니터링 업무 방침 및 처리 가이드	지라 confluence 업무 가이드 https://conf.munpia.com/x/EYBPAw	✓
문피아 신고 기능의 이해	신고 방법 및 처리에 대한 업무 가이드	지라 confluence 업무 가이드 https://conf.munpia.com/x/FIBPAw	✓

<교육내용 확인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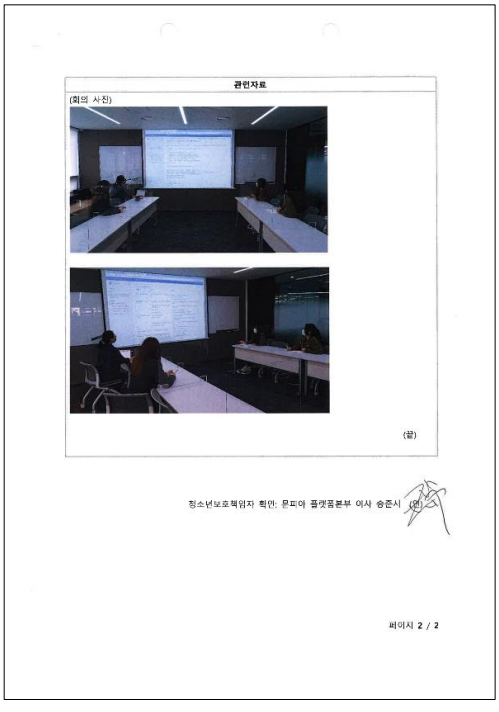
1. 청소년보호 관련 직무 교육 내용을 전체 확인하고 숙지하였습니까? ✓ 아니오
2. 청소년보호 가이드를 준수하여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까? ✓ 아니오
3. 청소년보호 관련하여 건의 사항이 있다면 작성해주세요.

모니터링과 신고처리 시 범죄가 좀 더 세분화되고 명확하게 구분 되었다면 수월할것같습니다.

직성일: 2020. 6. 25

작성자: 고객정책팀 권태현

청소년보호책임자 확인: 문피아 플랫폼본부 이사 송준서



관련자료

(회의 사진)

(끝)

청소년보호책임자 확인: 문피아 플랫폼본부 이사 송준서

○ 법 시행 이후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교육 계획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직무 교육을 시행한다.

① 목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의 유통방지를 위해 업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② 진행 시기 및 횟수: **연 1회 필수 교육.**

③ 방식

A. 방통위 지정 교육기관에서 하는 의무교육

- 대상: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5조의 2, 제4항에 따른 유통방지 책임자 의무교육.
- 교육 시간: 약 2시간.

B. 자체교육

- 대상: 플랫폼 서비스 운영 업무 담당자(청소년보호, 모니터링, 신고하기, 콘텐츠 검수 등).
- 교육자료를 통한 서면 교육 후 개선 회의(대면 교육) 진행.
- 기존 시행하던 청소년보호 직무 교육 시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교육'을 추가하여 함께 진행.
- 대상자는 '청소년보호 및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교육내용 체크리스트[첨부1]' 작성 및 회의 참석 필수.
- 교육자료: 지라 Confluence '청소년보호 및 불법촬영물 유통방지를 위한 직무 교육 시행' 페이지에서 확인.

④ 시행일: 2021년부터.

(참고자료: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직무 교육

문서번호	문피아-2021-00480
품의일자	2021-01-26(화)
담당부서	정책운영팀
담당자	권태현
시행일	2021-01-26(화)
제목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직무 교육 시행 건

아래와 같이 품의 하오니 확인 후 재가 부탁드립니다.

1.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직무 교육 내용
   1) 목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의 유통방지를 위해 업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2) 진행 시기 및 횟수: **연 1회 필수 교육.**
   3) 방식
      ① 방통위 지정 교육기관에서 하는 의무교육
         - **대상: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5조의 2, 제4항에 따른 유통방지 책임자 의무교육.
         - 교육 시간: 약 2시간.
      ② 자체교육
         - **대상: 플랫폼 서비스 운영 업무 담당자(청소년보호, 모니터링, 신고하기, 콘텐츠 검수 등).**
         - 교육자료를 통한 서면 교육 후 개선 회의(대면 교육) 진행.
         - 기존 시행하던 청소년보호 직무 교육 시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교육'을 추가하여 함께 진행.
         - 대상자는 '청소년보호 및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교육내용 체크리스트[첨부1]' 작성 및 회의 참석 필수.
         - 교육자료: 지라 Confluence '청소년보호 및 불법촬영물 유통방지를 위한 직무 교육 시행' 페이지에서 확인.
      ③ 시행일: 2021년부터.

시행 확정 전자결재 품의서)